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예술인 정의 신설 등〉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89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지역예술인의 정의 신설 등(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6. 25.
3.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문화도시·문화지구 지정,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전담기관 지정 등 다양한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예술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지역예술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과 달리 지역예술인의 양성 및 자질 향상 지원 등 지역문화지원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예술인을 정의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술인의 양성과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기본원칙 및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6조 등).

III. 검토의견

1. 지역예술인의 정의 신설 등(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개정안은 지역예술인의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제9호),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에 지역문화전문인력과 지역예술인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안 제3조제5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예술인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6조제4호 및 제6조의2제3호).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인등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 지역문화예술인등의 양성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3조의3).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지역예술인”이란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현행	개정안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u>호1)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u>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술인 (이하 “지역문화예술인등”이라 한다)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u>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u>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u> 5. ~ 10. (생략) ② ~ ⑥ (생략)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지역문화예술인등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u> ----- ----- 5. ~ 10.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생략) ② 협력위원회와 시·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생략) 3. <u>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u> 4. ~ 6. (생략) ③ ~ ⑥ (생략)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u>지역문화예술인등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u> ----- -----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지역문화전문인력의</u>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지역문화전문인력을</u>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u>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u>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u>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u>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u>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u>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10조에 따른 <u>지역문화전문인력</u>의 양성 지원 4. ~ 10. (생략) ③ · ④ (생략) 제13조의4(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을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u>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u>,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0조(지역문화예술인등의 양성) ① -----<u>지역문화예술인등의</u>-----. ② -----<u>지역문화예술인등을</u>----- -----<u>지역문화예술인등의 양성기관(이하 “지역문화예술인등 양성기관”이라 한다)</u>-----. ③ -----<u>지역문화예술인등양성기관</u>에-----. ④ <u>지역문화예술인등양성기관의</u>-----. 제1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2. (현행과 같음) 3. -----<u>지역문화예술인등의</u>----- 4. ~ 10.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4(지정 취소) ① ----- ----- ----- -----<u>지역문화예술인등양성기관</u>----- ----- -----

현 행	개 정 안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5(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지역의 문화예술인의</u>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5(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u>지역예술인의</u> -----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지역문화전문인력²⁾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세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하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2)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포함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지역문화협력위원회와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등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3)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9.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력위원회와 시·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현행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지역문화진흥원은 2020년부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총괄기관으로 지정⁴⁾되어 양성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고, 각 지역 양성기관의 교육에 대한 성과관리 및 교육생 총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말 기준 총 2,155명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⁵⁾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지역문화전문인력에 대한 지원과는 달리 제13조의5⁶⁾에 따른 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이외에는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지역 예술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지

다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생활문화 활성화의 지원
2.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지원
3.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원
5. 제11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6. 제12조에 따른 협력활동 지원
7.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8. 제17조에 따른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9.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총괄주관기관이었음.

5) “지역문화전문인력 사업백서(2015~2023)”, 지역문화진흥원, 2024.

6)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5(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역예술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지역문화지원 정책에 지역예술인의 양성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문화예술정책분야에서는 지역소멸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내 예술 창작자 교육과 양성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부산과 같은 광역시에서도 예술대학의 학과 폐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⁷⁾

특히, 공연예술학과 대학 및 대학원이 수도권에 집중(62.4%)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예술대학의 학과 폐지는 지역 간 예술교육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전국 시도별 공연예술학과 수(2024년 기준) >

지역	무용	뮤지컬	방송연예	연극영화	영화	합계
서울	34	6	6	36	12	94
경기	15	5	13	43	9	85
인천	0	0	0	3	0	3
부산	7	2	2	6	5	22
충남	2	3	3	11	3	22
충북	2	0	1	9	1	13
전북	3	1	1	4	1	10
경북	4	0	1	3	0	8
대전	2	0	0	3	2	7
경남	4	0	1	0	0	5

7) “올해 수시모집도 못했다. 부산예대, 결국 자진폐교 수순”, 국제신문, 2025. 11. 5.

지역	무용	뮤지컬	방송연예	연극영화	영화	합계
광주	4	0	0	1	0	5
대구	2	1	0	2	0	5
전남	1	0	0	3	0	4
인천	0	0	0	3	0	3
강원	2	0	1	0	0	3
제주	0	0	0	1	0	1
소계	82	18	29	125	33	287

※ 자료 :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 육성 현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

이에 개정안은 지역예술인의 양성 및 지역정착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지역예술인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예술인의 자질 향상 지원과 양성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이를 통하여 문화예술교육과 창작을 위한 인프라가 강화되어 지역의 예비 및 신진 예술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의 자생력 있는 예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각 지역의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교육부와 면밀한 협의⁸⁾를 통하여

8) 「고등교육법」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부합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령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대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으로 되어 있는데,⁹⁾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역문화재단인 상황이지만, 대학교와 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지정 및 지원된 연혁¹⁰⁾이 있음.

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재정 여건 전망
3. 학교의 역할 및 특성에 따른 재정지원 배분 방향
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5.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9)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5.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
6. 그 밖에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10) 전북대학교(2015년~2016년),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2021년~2022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컨소시엄 구성), 덕성여자대학교(2023년~2025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 생태계의 주요 요소인 지역문화전문인력과 함께 지역예술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술인’과 구분되는 ‘지역예술인’의 개념을 정의하기 어렵고¹¹⁾, 정의 규정에 ‘지역예술인’을 별도 정의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역문화진흥 정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예술인’ 정의 신설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술인의 양성과 지역 정착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해, 제3조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에 포함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자유에 기반한 창작이 중요한 예술인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양성 보다는 지원이 정책적으로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안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와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서 지역예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를 고려하

출처 : “지역문화전문인력 사업백서(2015~2023)”, 지역문화진흥원, 2024., p.14.

11) 개정안의 지역예술인은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인’이고, ‘지역문화’는 지자체 행정구역 또는 지역 기반의 활동을 의미하여 수도권 및 비수도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 ‘예술인’의 개념과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여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음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의 광역·기초 문화재단 등 지역예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이 이미 운영되고 있어, 지역문화전문인력과 달리 지역예술인을 양성하는 기능을 하는 별도 기관을 지정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의5에 대하여 지역예술인을 포함한 생활문화 활동가 등 지역문화 향유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입법취지와 함께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84